

대신대학교 보직교원임기 규정

제 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신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직제 상의 보직 교원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임기) ① 본교 보직교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학과(부)장은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② 임면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보직을 경질할 수 있으며, 경질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부칙

1. 이 규정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